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99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형수・임종득・이종배

이만희 · 송석준 · 조배숙

곽규택 · 장동혁 · 엄태영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 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 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 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안 제24조의2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판단될 경우 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첩심의위원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이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장
- 2.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3. 형사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 4.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
-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

- ⑤ 이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한성으로 의결한다.
- ⑥ 수사처와 이첩요청을 받은 당해 수사기관은 이첩심의위원회 심 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⑦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⑧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이첩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⑨ 그 밖에 이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	①
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	
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	
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u>판단하여 이</u>	판단될 경우 처장은 이첩을
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	<u><</u> 삭 제>
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	
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	
<u>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	<u><삭 제></u>
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	
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	
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4조의2(이첩심의위원회) ① 제
	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 에 이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이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위촉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장
- 2.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3. 형사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
 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 4.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
-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
- ⑤ 이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수사처와 이첩요청을 받은 당해 수사기관은 이첩심의위원 회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다.

- ⑦제4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중임할수없다.
- ⑧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이첩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⑨ 그 밖에 이첩심의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